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운영규정 10-1-15

규정번호 10-1-15
제정일자 2016.4.26
최근개정
개정차수
관리부서 산학협력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센터는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

제3조(사업) 센터는 중소기업의 제품의 개발, 상품화, 생산, 경영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교육, 기술지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2.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3.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5.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6.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7.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사업
8.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9.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10.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사업
11. 국제기술협력 지원사업
12.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3. 제1호에서 제12호까지 사업의 운영체제 및 제도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기획 및 정책평가 사업

제4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 할 수 있으며, 약간명의 교직원 또는 연구원(계약직)(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9인 이내의 교내·외 전문가를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운영 기본계획 및 예·결산
2. 센터운영 관련 제규정 제·개정
3.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 및 과제 관한 사항
4.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 및 제반 사항
5. 기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회의록은 센터에 보관한다.

제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우리대학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8조(운영세칙) 센터 운영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